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9,127,610	15,573,828
일반회계	434,113,080	13,023,392
특별회계	85,014,530	2,550,436
공기업특별회계	24,035,852	721,07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990,812	479,72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045,040	241,351
기타특별회계	60,978,678	1,829,3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888,447	56,653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25,028	15,75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9,312	60,579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1,019,231	30,577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50,189	22,506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3,410,805	102,32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65,000	82,95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9,195	3,87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91,108	14,733
도시개발특별회계	1,255,511	37,665
중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44,000,000	1,32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444,859	13,34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79,993	8,400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2,000,000	60,000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64,05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 5. 재해대책및 복구경비